

# 제주 중부공원 |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4년 2월 16일]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2.16.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라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화)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제1차 청약 무효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회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회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2.16)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2.16.)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가(2023.2.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적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정적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외 투기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조건에 응하지 않거나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세대에 대한 사후 무순위 아파트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유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수반자가 공동하게 분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수입인지를 선구해 후 계약서 발행시, 수반자가 사업주체에 50%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인원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자하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 공판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주택과·9669호(2024.02.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5층 12개동 총 728세대 중 일반분양 653세대 및 임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7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액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 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분양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3000668	01	084.9970A	84A	84.9970	25.8672	110.8642	83.4138	194.2780	55.9579	130	130	6
		02	084.9936B	84B	84.9936	26.0474	111.0410	83.4104	194.4514	55.9556	87	87	1
		03	084.9963C	84C	84.9963	26.2100	111.2063	83.4131	194.6194	55.9574	231	231	8
		04	119.7622A	119A	119.7622	35.5857	155.3479	117.5314	272.8793	78.8456	102	102	4
		05	119.9970B	119B	119.9970	36.4476	156.4446	117.7618	274.2064	79.0001	28	28	1
		06	124.9920	124	124.9920	37.0050	161.9970	122.6638	284.6608	82.2886	75	75	5
합계											653	653	25

※ 주거공용면적은 벽체공용면적과 계단공용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실, 방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지하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sup>2</sup>,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1차(5%)		2차(5%)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4.04.02	2024.05.02	2024.10.10	2025.03.10	2025.08.10	2026.08.10	2026.11.10		2027.01.10	입주시점기간내 (입주시일)		
84A	130	1	6	240,695,000	510,305,000	-	751,000,000	10,000,000	27,550,000	37,55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225,300,000			
		2	9	248,387,000	526,613,000	-	775,000,000	10,000,000	28,750,000	38,75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232,500,000			
		3	9	253,515,000	537,485,000	-	791,000,000	10,000,000	29,550,000	39,55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237,300,000			
		기준층	106	256,079,000	542,921,000	-	799,000,000	10,000,000	29,950,000	39,95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239,700,000			
84B	87	1	1	240,695,000	510,305,000	-	751,000,000	10,000,000	27,550,000	37,55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225,300,000			
		2	2	248,387,000	526,613,000	-	775,000,000	10,000,000	28,750,000	38,75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232,500,000			
		3	7	253,515,000	537,485,000	-	791,000,000	10,000,000	29,550,000	39,55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237,300,000			
		기준층	77	256,079,000	542,921,000	-	799,000,000	10,000,000	29,950,000	39,95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239,700,000			
84C	231	1	8	238,003,000	494,197,000	-	732,200,000	10,000,000	26,610,000	36,610,000	73,220,000	73,220,000	73,220,000	73,220,000	73,220,000	73,220,000	219,660,000			
		2	16	245,599,000	510,001,000	-	755,600,000	10,000,000	27,780,000	37,78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226,680,000			
		3	16	250,663,000	520,537,000	-	771,200,000	10,000,000	28,560,000	38,560,000	77,120,000	77,120,000	77,120,000	77,120,000	77,120,000	77,120,000	231,360,000			
		기준층	191	253,195,000	525,805,000	-	779,000,000	10,000,000	28,950,000	38,950,000	77,900,000	77,900,000	77,900,000	77,900,000	77,900,000	77,900,000	233,700,000			
119A	102	1	4	345,800,800	733,272,000	73,327,200	1,152,400,000	10,000,000	47,620,000	57,620,000	115,240,000	115,240,000	115,240,000	115,240,000	115,240,000	115,240,000	345,720,000			
		2	7	356,843,200	756,688,000	75,668,800	1,189,200,000	10,000,000	49,460,000	59,460,000	118,920,000	118,920,000	118,920,000	118,920,000	118,920,000	118,920,000	356,760,000			
		3	7	364,195,300	772,277,000	77,227,700	1,213,700,000	10,000,000	50,685,000	60,685,000	121,370,000	121,370,000	121,370,000	121,370,000	121,370,000	121,370,000	364,110,000			
		기준층	84	367,885,600	780,104,000	78,010,400	1,226,000,000	10,000,000	51,300,000	61,300,000	122,600,000	122,600,000	122,600,000	122,600,000	122,600,000	122,600,000	367,800,000			
119B	28	1	1	335,658,500	711,765,000	71,176,500	1,118,600,000	10,000,000	45,930,000	55,930,000	111,860,000	111,860,000	111,860,000	111,860,000	111,860,000	111,860,000	335,580,000			
		2	1	346,370,900	734,481,000	73,448,100	1,154,300,000	10,000,000	47,715,000	57,715,000	115,430,000	115,430,000	115,430,000	115,430,000	115,430,000	115,430,000	346,290,000			
		3	2	353,512,500	749,625,000	74,962,500	1,178,100,000	10,000,000	48,905,000	58,905,000	117,810,000	117,810,000	117,810,000	117,810,000	117,810,000	117,810,000	353,430,000			
		기준층	24	357,083,300	757,197,000	75,719,700	1,190,000,000	10,000,000	49,500,000	59,5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357,000,000			
124	75	1	5	352,581,700	747,653,000	74,765,300	1,175,000,000	10,000,000	48,750,000	58,75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352,500,000			
		2	5	363,834,600	771,514,000	77,151,400	1,212,500,000	10,000,000	50,625,000	60,625,000	121,250,000	121,250,000	121,250,000	121,250,000	121,250,000	121,250,000	363,750,000			
		3	5	371,336,900	787,421,000	78,742,100	1,237,500,000	10,000,000	51,875,000	61,875,000	123,750,000	123,750,000	123,750,000	123,750,000	123,750,000	123,750,000	371,250,000			
		기준층	60	375,087,500	795,375,000	79,537,500	1,250,000,000	10,000,000	52,500,000	62,5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375,000,000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법] 또는 [형평한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법(제)]으로 기재된 평형으로 이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방법(㎡)으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커널로그, 홍보제목을 반드시 꼭 표현될 수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를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반민간임대주택(66㎡) 75세대는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에 미포함되었으며, 추후 임대공급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사업주체에서 「주택법」, 「중복」, 「행방」에 따라 자정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옵션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계약자가 대학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에서 착오 및 오타가 들어 있을 수 있으며,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2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취급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행방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선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단지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정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림.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멸된 날 내에 해당 공급가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명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해당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예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이다.

## 3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4.02.27(화) 09:00 - 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등록 가입일정 창구
	2순위	2024.02.28(수) 09:00 - 17:30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당일 오전 12시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은 본인에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 접수시간: 09:00~16:00. 단, 은행 영업일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일시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